

의안번호	2215888
의 퇴 인	김현정의원
회 답 일	2026. 4. 7.
추계번호	26D00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안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무공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369억 2,300만원, 2031년 793억 9,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309억 9,100만원(연평균 1,061억 9,8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지방자치단체 무공수훈자 수당 등에 대한 국가의 차등 보조 (안 제16조의5제3항)	136,923	119,470	104,244	90,964	79,390	530,991	106,198

주: 1. 지방자치단체 무공수훈자 수당 등에 대한 국가의 차등 보조(안 제16조의5제3항)는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2026년 1월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무공수훈자(유족 포함)와 4·19혁명공로자(부상자, 사망자, 유족포함)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차이가 있는데,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장 높은 수당(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20만원, 4·19혁명 본인 15만원, 유족 2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차액을 국가가 100%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5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수당)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당의 지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6조의5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수당)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장 높은 수당(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20만원, 4·19혁명 본인 15만원, 유족 2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차액을 국가가 100%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
 -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무공수훈자 수당은 본인과 유족 5만원~20만원, 4·19혁명공로자 수당은 본인 45,500원~15만원, 유족 45,500원~20만원
 -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현재 수령하고 있는 금액보다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추계에서는 가장 높은 수당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해당 금액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차액을 국가가 100%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차등 보조하는 경우 현재 수당보다 인상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추계기간 동안 추가적인 수당 인상은 없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장 높은 수당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상자 수(무공수훈자 본인과 유족, 4·19혁명공로자 본인과 유족)와 국가가 보조해야 할 1인당 지급액을 곱하여 산출
 - (대상자 수) 본 추계에서는 최근 5년(2022~2026년) 동안의 무공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 수 증가율 각각 -12.8%, -5.1%¹⁾를 적용하여 17개 지방자치단체별 대상자 수를 추정
 - 지방자치단체, 본인 또는 유족 여부에 따라 대상자 수의 증가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본인 기준의 무공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 수 증가율 적용

[표 2] 지방자치단체별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대상자 수 추정: 2026~2031년

(단위: 명)

무공(본인)	2026(1월 기준 실적치)	2027	2028	2029	2030	2031
서울	2,281	1,989	1,734	1,512	1,319	1,150
부산	748	652	569	496	432	377
대구	475	414	361	315	275	239
인천	511	446	389	339	295	258
광주	195	170	148	129	113	98
대전	328	286	249	217	190	165
울산	131	114	100	87	76	66
세종	54	47	41	36	31	27
경기	2,887	2,517	2,195	1,914	1,669	1,456
강원	406	354	309	269	235	205
충북	298	260	227	198	172	150
충남	351	306	267	233	203	177
전북	327	285	249	217	189	165
전남	354	309	269	235	205	178
경북	59	51	45	39	34	30
경남	527	460	401	349	305	266
제주	187	163	142	124	108	94

1) 국가보훈부의 2026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1에서 제공하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증가율을 평균한 값

무공(유족)	2026(1월 기준 실적치)	2027	2028	2029	2030	2031
서울	15,369	13,402	11,686	10,190	8,886	7,749
부산	5,414	4,721	4,117	3,590	3,130	2,730
대구	3,892	3,394	2,959	2,581	2,250	1,962
인천	4,517	3,939	3,435	2,995	2,612	2,277
광주	1,215	1,059	924	806	702	613
대전	1,967	1,715	1,496	1,304	1,137	992
울산	1,502	1,310	1,142	996	868	757
세종	396	345	301	263	229	200
경기	20,601	17,964	15,665	13,660	11,911	10,387
강원	3,365	2,934	2,559	2,231	1,946	1,697
충북	2,546	2,220	1,936	1,688	1,472	1,284
충남	2,799	2,441	2,128	1,856	1,618	1,411
전북	2,148	1,873	1,633	1,424	1,242	1,083
전남	2,391	2,085	1,818	1,585	1,382	1,205
경북	445	388	338	295	257	224
경남	5,112	4,458	3,887	3,390	2,956	2,577
제주	1,817	1,584	1,382	1,205	1,051	916

자료: 국가보훈부 제공자료(2026년 1월 기준 실적치)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지방자치단체별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대상자 수 추정: 2026~2031년
(단위: 명)

4·19(본인)	2026(1월 기준 실적치)	2027	2028	2029	2030	2031
서울	134	127	121	115	109	103
부산	17	16	15	15	14	13
대구	8	8	7	7	6	6
인천	5	5	5	4	4	4
광주	8	8	7	7	6	6
대전	7	7	6	6	6	5
울산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경기	105	100	95	90	85	81
강원	4	4	4	3	3	3
충북	5	5	5	4	4	4
충남	6	6	5	5	5	5
전북	5	5	5	4	4	4
전남	5	5	5	4	4	4
경북	0	0	0	0	0	0
경남	22	21	20	19	18	17
제주	0	0	0	0	0	0
4·19(유족)	2026(1월 기준 실적치)	2027	2028	2029	2030	2031
서울	194	184	175	166	157	149
부산	34	32	31	29	28	26
대구	21	20	19	18	17	16
인천	17	16	15	15	14	13
광주	5	5	5	4	4	4
대전	6	6	5	5	5	5
울산	2	2	2	2	2	2
세종	0	0	0	0	0	0
경기	149	141	134	127	121	115

강원	6	6	5	5	5	5
충북	7	7	6	6	6	5
충남	8	8	7	7	6	6
전북	0	0	0	0	0	0
전남	4	4	4	3	3	3
경북	0	0	0	0	0	0
경남	47	45	42	40	38	36
제주	0	0	0	0	0	0

자료: 국가보훈부 제공자료(2026년 1월 기준 실적치)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인당 월지급액)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기준금액(무공수훈자 본인과 유족 20만원, 4·19혁명공로자 본인 15만원, 유족 20만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공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 수당의 차액을 국가가 100% 보조하면 1인당 월지급액은 무공수훈자 본인과 유족은 8만원~20만원, 4·19혁명공로자 본인 3만원~15만원, 유족 8만원~20만원으로 추정

[표 4] 국가가 보조할 지방자치단체별 1인당 월지급액 추정: 무공수훈자

(단위: 원)

구분	무공(본인)			무공(유족)		
	현행법	개정안	차액	현행법	개정안	차액
서울	200,000	200,000	0	200,000	200,000	0
부산	—		200,000	—		200,000
대구	140,000		60,000	—		200,000
인천	50,000		150,000	50,000		150,000
광주	—		200,000	—		200,000
대전	50,000		150,000	—		200,000
울산	—		200,000	—		200,000
세종	—		200,000	—		200,000
경기	—		200,000	—		200,000
강원	60,000		140,000	—		200,000
충북	—		200,000	—		200,000
충남	—		200,000	—		200,000
전북	—		200,000	—		200,000
전남	—		200,000	—		200,000
경북	50,000		150,000	—		200,000
경남	—		200,000	—		200,000
제주	120,000		80,000	120,000		80,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5] 국가가 보조할 지방자치단체별 1인당 월지급액 추정: 4·19혁명공로자

(단위: 원)

구분	4·19(본인)			4·19(유족)		
	현행법	개정안	차액	현행법	개정안	차액
서울	150,000	150,000	0	200,000	200,000	0
부산	50,000		100,000	50,000		150,000
대구	50,000		100,000			200,000
인천	50,000		100,000	50,000		150,000
광주	45,500		104,500	45,500		154,500
대전	—		150,000	—		200,000
울산	—		150,000	—		200,000
세종	—		150,000	—		200,000
경기	—		150,000	—		200,000
강원	60,000		90,000	—		200,000
충북	—		150,000	—		200,000
충남	—		150,000	—		200,000
전북	—		150,000	—		200,000
전남	—		150,000	—		200,000
경북	50,000		100,000	—		200,000
경남	—		150,000	—		200,000
제주	120,000		30,000	120,000		80,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369억 2,300만원, 2031년 793억 9,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309억 9,100만원으로 추계됨

○ [표 2]와 [표 3]의 지방자치단체별 연도별 대상자 수, [표 4]와 [표 5]의 지방자치단체별 1인당 월지급액,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무공수훈자	135,936	118,540	103,367	90,130	78,596	526,569
4·19혁명공로자	987	930	877	834	794	4,422
합계	136,923	119,470	104,244	90,964	79,390	530,9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장 높은 수당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차액을 국가가 100%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